#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5년 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전월대비 로는 2.5% 증가

- 2015년 2월 생산은 제조업, 출판영상 등에서 감소하 였으나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 월대비 0.8%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석유정제(14.0%), 반도체(14.9%), 의료정밀광학(5.3%)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11.7%), 기타운송장비(-25.9%), 금속가공(-12.0%)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전월 대비로는 2.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8.5%), 보건·사회복 지(7.4%), 부동산 · 임대(4.6%), 운수(4.2%) 등 서비 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고 예술·스포츠·여가 (-2.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0.4%) 등에 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2015년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10.8%)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5% 증 가(전월대비 2.8%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 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전월대비 3.6%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 량, 사무실 등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 2015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상승함.

#### ◆ 201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4% 상승(생활물가지수 0.8% 감소)

- 201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8(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보합이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0.4%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49.8%), 음식·숙박(2.2%), 교육(1.5%), 의류·신발(1.7%)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9.7%)과 주택·수도·전기·연료(-0.4%)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08.1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전월대 비로는 0.1% 상승)

####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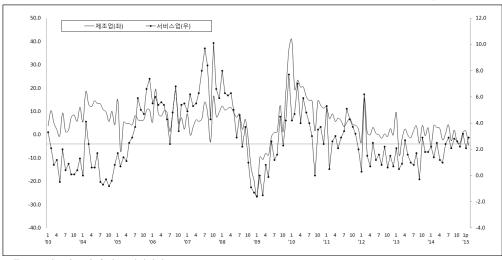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2월	2월p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4.5	-4.7( 2.6)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4.7	-4.8( 2.8)
생산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4.7	-4.6( 0.8)
생산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3.9	-3.5( 4.1)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5.5	-6.0( 3.5)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2	2.9( 1.6)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5.5	5.5( 2.8)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0.2	3.6( 3.6)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0	0.4( 0.0)

-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3월 기준임.
  - 4) 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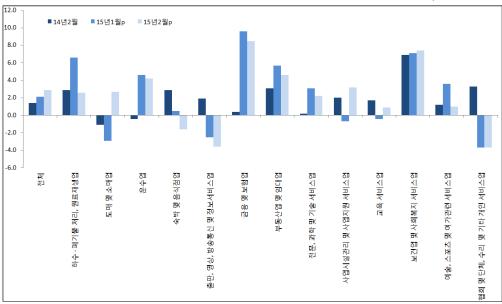


주:2015년 1월, 2월 수치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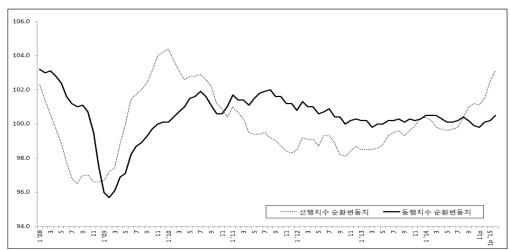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4), 『2015년 2월 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남성은 하락, 역성은 상승

○ 2015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6,35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11천 명(1.6%) 증가함.

####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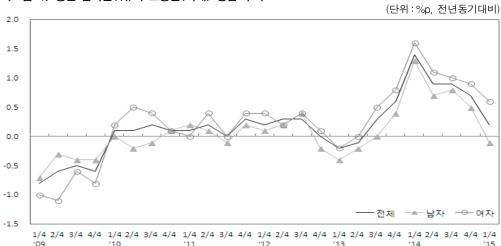
(단위: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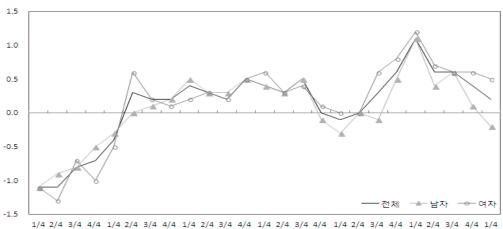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0.01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0.01	0.01
					3월					2월	3월
경 제	활동	인 구	26,078 ( 2.2)	25,945 ( 3.4)	26,187 ( 3.1)	26,767 ( 2.4)	26,810 ( 2.4)	26,622 ( 2.1)	26,356 ( 1.6)	26,398 ( 1.5)	26,577 ( 1.5)
참	가	율	61.7	61.3	61.8	63.1	63.0	62.4	61.5	61.6	62.0
취	업	자	25,346 ( 2.2)	24,913 ( 3.0)	25,163 ( 2.6)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267 ( 1.4)	25,195 ( 1.5)	25,501 ( 1.3)
고	용	률	60.0	58.8	59.4	60.8	60.9	60.4	59.0	58.8	59.5
실	업	자	733	1,031	1,024	977	884	854	1,089	1,203	1,076
실	업	률	2.8	4.0	3.9	3.7	3.3	3.2	4.1	4.6	4.0
비경제활동인구		16,167 (-0.6)	16,397 (-2.6)	16,191 (-2.2)	15,685 (-1.4)	15,760 (-1.4)	16,066 (-0.6)	16,469 ( 0.4)	16,429 ( 0.5)	16,298 ( 0.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통계청(2015.4), 『2015년 3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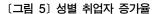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317천 명으로 167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은 11,040 천 명으로 246천 명(2.3%) 증가하였음.
- 2015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1%)은 전년동분기대비 0.1%p 하락, 여성(50.5%)은 전년동분 기대비 0.6%p 상승하였음(그림 4 윗그림 참조).
- 2015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9.0%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하락, 여성의 고용률은 48.4%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4 아랫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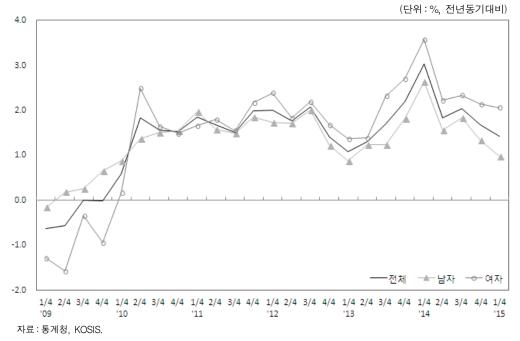
#### [그림 4] 성별 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1/4 2/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





- 2015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5,26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4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9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1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57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3천 명(2.1%)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5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1,08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8천 명(5.6%) 증가, 실업률은 4.1%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62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6천 명(4.3%)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6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천 명(7.4%)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1%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은 4.2%로 전년 동분기대비 0.2%p 상승하였음.
- 2015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46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2천 명(0.4%)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64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4천 명(1.5%) 증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2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천 명(-0.1%) 감소하였음.
  - 2015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9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71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5천 명(9.9%)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29천 명으로 141천 명(-3.4%) 감소하였음.

### ◆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5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39천 명, 3.2%), 건설업(73천 명, 4.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7천 명, 2.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3천명, 1.3%)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7천 명, -7.3%), 전기·운수·통신·금융업(-26천 명, -0.9%)에서는 감소하였음.

####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산 업	25,346 ( 2.2)	24,913	25,163 ( 2.6)	25,790 ( 1.8)	25,927	25,767	25,267 ( 1.4)	25,195 ( 1.5)	25,501 ( 1.3)
농림어업	1,504 (-1.0)	1,179	1,327 (-3.0)	1,631 (-3.2)	1,603 (-7.0)	1,395 (-7.2)	1,092	1,036 (-7.7)	1,257 (-5.3)
제조업	4,245	4,279	4,284	4,319	4,346	4,374	4,418	4,433	4,400
	( 1.2)	( 3.0)	( 3.5)	( 3.3)	( 4.7)	( 3.0)	( 3.2)	( 3.7)	( 2.7)
건설업	1,783	1,683	1,699	1,813	1,833	1,854	1,756	1,732	1,777
	(-0.5)	( 1.6)	( 0.3)	( 0.6)	( 3.2)	( 4.0)	( 4.3)	( 4.1)	( 4.6)
도소매 및 음식·	5,751	5,837	5,790	5,798	5,930	5,992	5,984	6,009	5,924
숙박업	( 2.6)	( 5.5)	( 6.2)	( 3.8)	( 4.9)	( 4.2)	( 2.5)	( 2.4)	( 2.3)
사업·개인·공공	8,994	8,865	9,012	9,147	9,176	9,128	8,978	8,943	9,100
서비스업 및 기타	( 3.6)	( 2.4)	( 2.0)	( 1.9)	( 2.1)	( 1.5)	( 1.3)	( 1.4)	( 1.0)
전기·운수·통신	3,054	3,055	3,038 ( 1.0)	3,067	3,026	3,015	3,029	3,033	3,030
및 금융업	( 1.9)	( 1.9)		(-0.5)	(-2.5)	(-1.3)	(-0.9)	(-0.9)	(-0.3)

주:1)()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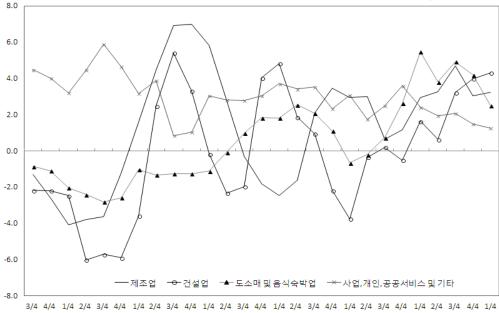
<sup>2) 2009</sup>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sup>3)</sup>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5.4), 『2015년 3월 고용동향』.

####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3/4 4/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4 2/4 3/4 1

### ◈ 자영업자 감소

- 2015년 1/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6,50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8천 명(-1.3%) 감소, 임금근로자는 18,75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42천 명(2.4%)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341천 명으로 356천 명(3.0%)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918천 명으로 83천 명(1.7%)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500천 명으로 4천 명(0.3%)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짐(그림 7 참조).
- 2015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8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6천 명(2.7%)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091천 명으로 262 천 명(1.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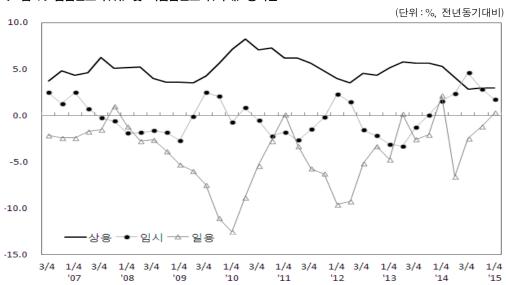
####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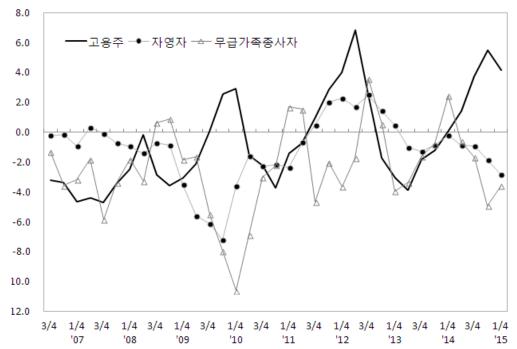
(단위:천명,%,전년동기대비,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5,346	24,913	25,163	25,790	25,927	25,767	25,267	25,195	25,501
	( 2.2)	( 3.0)	( 2.6)	( 1.8)	( 2.0)	( 1.7)	( 1.4)	( 1.5)	( 1.3)
비임금근로자	6,854	6,597	6,766	6,984	7,047	6,799	6,509	6,434	6,702
	(-0.9)	( 0.3)	(-0.1)	(-0.3)	( 0.0)	(-0.8)	(-1.3)	(-1.4)	(-0.9)
자영업주	5,618	5,512	5,613	5,712	5,760	5,625	5,463	5,405	5,593
	(-0.9)	(-0.1)	(-0.3)	(-0.2)	( 0.3)	( 0.1)	(-0.9)	(-1.1)	(-0.3)
무급가족종사자	1,236	1,085	1,153	1,272	1,287	1,175	1,046	1,029	1,109
	(-0.8)	( 2.5)	( 1.1)	(-0.6)	(-1.7)	(-4.9)	(-3.6)	(-2.8)	(-3.8)
임금근로자	18,492	18,316	18,397	18,806	18,880	18,968	18,758	18,761	18,799
	( 3.4)	( 4.0)	( 3.7)	( 2.6)	( 2.8)	( 2.6)	( 2.4)	( 2.5)	( 2.2)
상용근로자	11,925 ( 5.6)	11,985 ( 5.3)	12,034 ( 4.5)	12,175 ( 4.1)	12,181 ( 2.8)	12,280 ( 3.0)	12,341 ( 3.0)	12,353 ( 3.2)	12,364 ( 2.7)
임시근로자	4,935	4,835	4,926	5,063	5,153	5,076	4,918	4,887	4,968
	( 0.0)	( 1.5)	( 3.3)	( 2.4)	( 4.6)	( 2.9)	( 1.7)	( 1.3)	( 0.9)
일용근로자	1,631	1,496	1,438	1,567	1,546	1,612	1,500	1,521	1,466
	(-2.1)	( 2.1)	(-1.8)	(-6.6)	(-2.5)	(-1.2)	( 0.3)	( 1.3)	( 1.9)
36시간 미만	3,395 ( 5.5)	3,593 (-35.4)	3,545 ( 5.7)	3,397 (-29.5)	5,229 ( 2.9)	3,659 ( 7.8)	3,689 ( 2.7)	3,677 ( 0.3)	3,617 ( 2.0)
36시간 이상	21,636 ( 1.7)	20,829 (15.1)	21,270 ( 2.0)	22,090 ( 9.3)	20,184 ( 1.9)	21,779 ( 0.7)	21,091 ( 1.3)	21,041 ( 1.7)	21,577 ( 1.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통계청(2015.4),『2015년 3월 고용동향』.

####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주: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 30대 및 60세 이상 실업률 하락

- 2015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30대(3.1%, -0.1%p)와 60세 이상(4.1%, -0.3%p) 연령대에서는 하락, 15~29세(10.3%, 0.5%p) 및 40대(2.4%, 0.1%p), 50대(2.6%, 0.4%p) 연령대에서는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경우 전년동분기대비 고졸(4.5%, 0.2%p), 대졸 이상(3.9%, 0.2%p)에서는 상승하였고, 중졸 이하(3.9%)에서는 전년동분기와 동일하였음.
- 2015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 1,08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9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9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천 명 증가함.

####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733 ( 2.8)	1,031 ( 4.0)	1,024 ( 3.9)	977 ( 3.7)	844 ( 3.3)	854 ( 3.2)	1.089 ( 4.1)	1,203 ( 4.6)	1,076 ( 4.0)
15~29세	328 ( 7.9)	419 ( 9.8)	412 ( 9.9)	399 ( 9.4)	371 ( 8.6)	350 ( 8.3)	445 (10.3)	484 (11.1)	455 (10.7)
30~39세	155 ( 2.6)	187 ( 3.2)	199 ( 3.4)	202 ( 3.4)	181 ( 3.0)	164 ( 2.8)	184 ( 3.1)	191 ( 3.3)	194 ( 3.3)
40~49세	114 ( 1.7)	155 ( 2.3)	167 ( 2.4)	167 ( 2.4)	145 ( 2.1)	146 ( 2.1)	164 ( 2.4)	171 ( 2.5)	175 ( 2.6)
50~59세	88 ( 1.5)	130 ( 2.2)	143 ( 2.4)	140 ( 2.3)	129 ( 2.1)	136 ( 2.2)	157 ( 2.6)	168 ( 2.8)	149 ( 2.5)
60세 이상	48 ( 1.4)	140 ( 4.4)	103 ( 3.0)	69 ( 1.9)	58 ( 1.5)	58 ( 1.6)	139 ( 4.1)	187 ( 5.6)	103 ( 2.8)
중졸 이하	84 ( 1.8)	173 ( 3.9)	139 ( 3.1)	108 ( 2.3)	95 ( 2.0)	96 ( 2.1)	164 ( 3.9)	209 ( 5.0)	131 ( 3.0)
고졸	335 ( 3.3)	443 ( 4.3)	423 ( 4.1)	427 ( 4.1)	414 ( 3.9)	381 ( 3.6)	472 ( 4.5)	514 ( 4.8)	444 ( 4.2)
대졸 이상	313 ( 2.8)	416 ( 3.7)	462 ( 4.1)	442 ( 3.8)	375 ( 3.3)	377 ( 3.3)	453 ( 3.9)	481 ( 4.2)	501 ( 4.3)
취업무경험 실업자	49	83	73	61	56	54	90	104	89
취업유경험 실업자	684	948	951	916	827	800	999	1,099	98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4), 『2015년 3월 고용동향』.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8.8% 하락

- 2015년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시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49 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8% 하락함.
  - 2015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528천 원)은 초과급여(9.0%)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9.4% 하락함. 이는 특별급여(-45.4%)의 하락폭이 컸던 데 기인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1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3.6%임.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66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에 그침.
- 2015년 1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 9.6% 하락함.
  - 2015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9.6% 하락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상승률의 감소폭이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이 크게 하락함.

#### 〈표 6〉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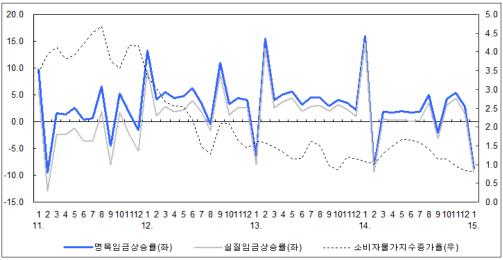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1월	1월
전체 근	로자	2,995	3,111	3,190	3,673	3,349
임금총액		( 5.3)	( 3.9)	( 2.5)	(15.9)	(-8.8)
	임금총액	3,178	3,299	3,378	3,895	3,528
		( 5.3)	( 3.8)	( 2.4)	(16.5)	(-9.4)
	정액급여	2,470	2,578	2,660	2,658	2,753
상용 근로자	3 H H M	( 5.5)	( 4.4)	( 3.2)	( 3.5)	( 3.6)
	초과급여	181	184	201	185	202
		( 1.0)	( 1.7)	( 9.3)	( 5.0)	( 9.0)
	특별급여	527	537	516	1051	574
	국 <u>일</u> 급어	( 5.8)	( 1.8)	(-3.7)	(75.7)	(-45.4)
임시・일	용근로자	1,293	1,377	1,387	1,464	1,466
임금총액		( 6.4)	( 6.5)	( 0.7)	( 1.1)	( 0.1)
소비자물	レフレアレク	106.3	107.8	109.0	108.5	109.4
고미사물	バイエ	( 2.2)	( 1.2)	( 1.3)	( 1.1)	( 0.8)
실질임금	증가율	3.1	2.5	1.3	14.7	-9.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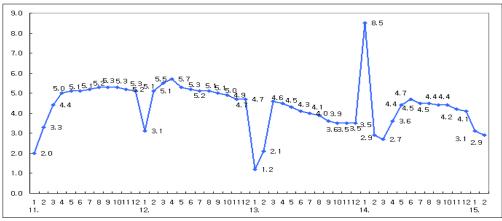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5년 2월 협약임금 인상률 2.9%

- 2015년 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2.9%로 2014년 2월 인상률(2.9%)과 같은 수준임.
  - 2015년 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0.1%로 전년동월(0.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 2015년 1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감소

- 2015년 1월 부동산업 및 임대업(0.8%)만 임금이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함.
  - 2015년 1월 임금감소가 컸던 산업은 제조업(-1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4%), 광업(-11.5%), 여가관련 서비스업(-9.1%), 교육서비스업(-8.4%) 등으로 나타남.

####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0040	2014		2015
	2013	2014	1월	1월
전 산 업	3,111 ( 3.9)	3,190 ( 2.5)	3,673 (15.9)	3,349 ( -8.8)
광업	3,557 ( 2.5)	3,480 (-2.1)	3,951 ( 2.4)	3,497 (-11.5)
제조업	3,371 ( 4.7)	3,506 ( 4.0)	4,589 (24.6)	3,963 (-1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 2.9)	5,554 ( 0.2)	5,027 (13.3)	4,877 ( -3.0)
하수 •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 3.3)	2,812 ( 2.5)	3,041 (11.9)	2,876 ( -5.4)
건설업	2,414 ( 6.2)	2,497 ( 3.4)	2,724 ( 9.5)	2,570 ( -5.6)
도매 및 소매업	3,168 ( 1.5)	3,206 ( 1.2)	3,334 ( 6.2)	3,159 ( -5.3)
운수업	2,732 ( 5.5)	2,805 ( 2.7)	2,762 (10.3)	2,669 ( -3.4)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 1.9)	1,785 ( 0.7)	1,828 ( 5.0)	1,773 ( -3.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 2.2)	3,905 (-0.8)	4,140 (12.7)	3,847 ( -7.1)
금융 및 보험업	5,058 ( 1.4)	5,234 ( 3.5)	5,768 (11.3)	5,603 (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 3.4)	2,323 ( 2.3)	2,381 ( 6.9)	2,400 ( 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 3.2)	4,419 ( 4.2)	4,715 (21.1)	4,130 (-12.4)
사업서비스업	1,883 ( 5.2)	1,924 ( 2.2)	1,970 ( 7.4)	1,940 ( -1.5)
교육서비스업	3,261 ( 4.4)	3,375 ( 3.5)	4,222 (13.2)	3,867 ( -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 2.0)	2,700 ( 1.4)	2,799 ( 4.1)	2,707 ( -3.3)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 5.2)	2,398 ( 3.1)	2,579 ( 7.5)	2,345 ( -9.1)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 1.0)	2,296 ( 3.2)	2,177 ( -5.2)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5년 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감소

○ 2015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감소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감소폭이 더 큼.

<sup>2) ( )</sup>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sup>3) 9</sup>차 산업분류 기준.

- 2015년 1월 기준 중소규모(5~299인)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3,016천 원으로 전 년동월대비 5.9% 하락함. 이는 초과급여(8.2%)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의 하락폭(-52.9%)이 컸기 때문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6.5%)는 물론 초과급여 (16.2%)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나 특별급여(-34.7%)의 감소폭이 커 전년동월 대비 11.7% 하락함.
- 2015년 1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만 감소함.
  - 중소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한 1,460 천원임.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547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함. 그러나 상승폭은 크게 둔화함.

####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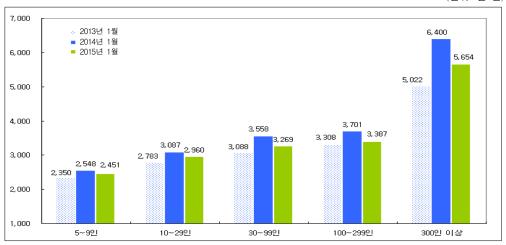
(단위:천 원,%)

		2013	2014		2015
		2013	2014	1월	1월
	전체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673(15.9)	3,349( -8.8)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895 (16.5)	3,528( -9.4)
전 규모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58(3.5)	2,753( 3.6)
(5인 이상)	초과급여	184( 1.7)	201 ( 9.3)	185( 5.0)	202( 9.0)
	특별급여	537( 1.8)	516(-3.7)	1,051 (75.7)	574 (-45.4)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64( 1.1)	1,466( 0.1)
	전체임금총액	2,764( 3.8)	2,836( 2.6)	3,109(11.0)	2,862( -5.2)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3,205(11.7)	3,016( -5.9)
5~299°I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501 ( 3.4)	2,588( 3.5)
5~2991	초과급여	160( 3.0)	172( 7.5)	158( 6.6)	171 ( 8.2)
	특별급여	345 (-0.3)	332(-3.6)	545(81.1)	257(-52.9)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0.1)	1,464 (-0.2)	1,460( -0.3)
	전체임금총액	4,447( 3.7)	4,678(5.2)	6,262 (28.2)	5,520(-11.9)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6,400 (27.5)	5,654(-11.7)
300인	정액급여	3,093(4.3)	3,272(5.8)	3,227( 4.3)	3,437( 6.5)
이상	초과급여	270 (-1.6)	316(16.9)	284( 2.8)	329( 16.2)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2,889(75.0)	1,888(-34.7)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11.1)	1,465(19.0)	1,547( 5.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5년 1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20일→21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2015년 1월 근로시간(175.0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
  - 2015년 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75.0시간)은 전년동월(169.0시간)에 비해 6.0시간 증가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180.0시간)은 상용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도 123.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함.

####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시간,%)

	2013	2014		2015
	2013	2014	1월	1월
전체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69.0 ( -7.4)	175.0 ( 3.6)
상용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3.4 ( -7.2)	180.0 ( 3.8)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0.7 ( -8.1)	167.4 ( 4.2)
상용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 3.2)	12.7 ( 5.0)	12.6 (-0.8)
비상용근로시간	122.5 ( 0.2)	117 (-4.5)	125.4 (-10.3)	123.0 (-1.9)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5년 1월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5년 1월 근로시간은 건설업(-0.1%)만 감소함.
  -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광업(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 사업서비스업(5.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4.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2%), 도매 및 소매업(4.1%), 금융 및 보험업(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5년 1월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

- 2015년 1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75.5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173.0시간을 기록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0010	0014		2015
	2013	2014	1월	1월
전 산 업	172.6(-1.0)	171.4(-0.7)	169.0( -7.4)	175.0( 3.6)
광업	180.6 (-2.5)	179.4(-0.7)	172.6(-10.6)	183.2( 6.1)
제조업	185.0 (-0.8)	185.4( 0.2)	182.1( -6.3)	188.6( 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70.5( -3.7)	175.0( 2.6)
하수 •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 (-1.5)	177.8(-2.3)	177.1 ( -7.2)	178.8( 1.0)
건설업	152.7( 0.1)	148.5(-2.8)	150.0(-10.9)	149.9(-0.1)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68.9( -7.8)	175.8( 4.1)
운수업	177.8(-2.1)	173.1(-2.6)	171.6( -6.5)	175.8( 2.4)
숙박 및 음식점업	177.3 (-5.0)	175.2(-1.2)	177.9( -3.8)	180.3( 1.3)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163.0 (-0.5)	161.9(-0.7)	159.0( -8.1)	166.5( 4.7)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 0.4)	160.8( -8.0)	167.3(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 (-0.7)	190.4( -5.3)	194.7( 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 (-0.8)	163.3(-0.4)	158.2( -8.3)	166.1(5.0)
사업서비스업	172.3 (-0.5)	171.9(-0.2)	168.4( -6.9)	176.8( 5.0)
교육서비스업	150.6 (-0.3)	152( 0.9)	150.8( -7.0)	154.5(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 (-1.6)	169.6(-1.4)	166.2( -8.1)	173.1( 4.2)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 (-0.1)	158.9( 0.6)	157.7( -3.4)	159.1( 0.9)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2.0( -9.1)	166.5( 2.8)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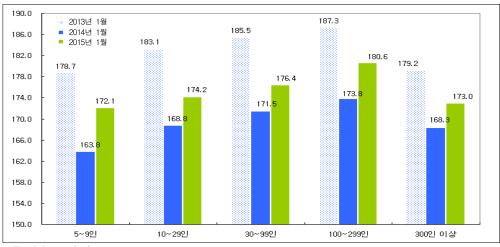
<sup>2) ()</sup>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sup>3) 9</sup>차 산업분류 기준.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1%,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2%, 30~
 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시간)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3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42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184건)보다 42건 낮은 수 치임.
- 지난 3월 조정성립률 59.1%
  - 지난 3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0.8%에 비해 8.3% 높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감소와 조정성립률의 상승을 통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들
    의 감소를 유추할 수 있음.

106\_노동리뷰 2015년 5월호

〈표 11〉	2014년	2015년	3원	조정사건	전수	민	처리내역별	혀화
\ш іі/	20 ITU.	20101	$\circ =$	TO/11		-	기니네ㅋㄹ	===

		접수	처리		조정성립		3	조정불성류	립	행정	취하		조정
		건수	건수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지도	철회	진행중	성립률
	2015. 3	142	114	55	26	29	38	6	32	4	17	28	59.1
ĺ	2014. 3	184	155	61	30	31	59	5	54	19	16	29	50.8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지난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2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17건)보다 10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47.3%(35건), 기각·각하· 취하비율이 52.7%(39건)를 차지함.

#### (표 12) 2014년, 2015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진행중
2015. 3	127	74	35	0	12	7	20	0	53
2014. 3	117	95	29	2	32	7	25	0	2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예고

-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과 일반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해 청년고용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임단협 교섭할 때 반영해야 내년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기준·절차는 6~7월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장관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 시 동의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다"며 "과거와 달리 복합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명확히 해줄 부분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함.

-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진행할 것"이라며 "4~5월에는 공감대를 이뤘던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자제분으로 청 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쪽으로 활용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 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절차 완화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과정에 서 제출한 5대 수용불가 항목인 데다, 노동계가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갈 등이 불가피해 보임.
  -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3권에 대한 침해이자 행정남용, 월권이나 다름없다"며 "한국노총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이 장관 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며 조만간 이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대변인도 비난하며 "정부가 계획하고 자본이 원하는 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 선언"이라며 "이기권 장관을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함.

###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 민주노총은 26만 9천 44명의 조합원(노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폐지를 촉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섰음.
  - 민주노총은 정부 방안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준비해 왔음.
  -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노정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 방안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비롯해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와 단체협약 개악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노동계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배경임.
-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공세적인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을 시작으로 5월 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노동절 집회에는 10만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부 실정을 규탄하고, 산하노조의 임금·단체

-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강도 높은 투쟁을 잇따라 계획하고 있음.
-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일방시행을 막기 위해 6월 총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 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통상임금 범위 관련 입법을 강행하거나, 취업규칙·일 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시행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임.
- ○○○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말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노동자대회를 서울 한 복판에서 열고, 6월에는 제조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2차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는 민주노총의 총 파업 대장정에 우리 모두 함께 진군하자"고 호소함.

### ◈ 한국노총. '정부의 단협 손보기'에 ILO 제소 방침

- 고용노동부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시 정지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지난달 산하 조직에 "노동3권과 노사 자율 교섭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침을 내림.
  - 한국노총은 이날 지침에서 불필요한 도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규정과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어진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함.
  - 하지만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 업무 외 재해 또는 질병, 회사 귀책사유(경영상 해고 등)로 퇴직한 노동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체결된 인사·경영사항과 관련한 단협 규정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할 경우 시정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밝힘.
  -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에 위법성은 없으나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침해와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혐의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할 방침임.
  - 한국노총은 "인사·경영 관련 조항은 조합원과 조합간부의 인사·처우 등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해고위협으로부터 조합원과 간부들을 보호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노사 자율교섭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함.

### ◈ 한국노총, 공공통합산별 출범선언

-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런과 공공연맹이 내년 상반기 통합연맹 출범을 선언하여, 한국 노총에 조합원 7만 4천여 명의 공공통합산별이 만들어질 전망임.
  -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지난달 17일 한국노총회관에서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공공부문노조 대통합을 통해 대정부·대국회 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2 단계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 방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힘.
  - 두 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조직력 확대를 통한 보편적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중심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현재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두 연맹의 통합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보편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두 연맹에 각 임원과 단위노조 위원장 15명씩 30명이 참여한 통합추진위를 통해 조직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조직 간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조직의 명칭·강 령·규약 같은 조직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공공연맹의 한 관계자는 "두 연맹 통합은 궁극적으로 모든 공공노조를 포괄하는 공공대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두 연맹 간 통합에 우선 주력하되, 다른 공공기관노조에 참여를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회의와 대의원대회 규약 개정을 통해 26개 산별연맹·노조를 5개 연맹으로 묶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노총은 대산별노조 건설을 장기적 조직발전 목표로 세우고 "대산별 건설을 통해 조직 통합력과 집중력을 높여 노조의 힘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하지만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업종 구분이나 향후 조직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통합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 하고 있음.
  -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합에 대한 반발기류가 없진 않지만 소수 산별조직으로는 활동에 한계가 있어 통합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산별 전환을 담은 규 약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에는 업 종별 공동투쟁이 진행되면서 조직통합에 한층 탄력이 붙는 분위기"라고 설명함.

### ◈ 공공비정규직노조, 4월 말 파업예고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파업에 나섬.
  - 노조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합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3.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음.
  -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고용불안·저임금 해소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소속 모든 단위가 이달 말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 원자력·화력발전소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이 가입해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 위협에 노출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노조 산하 각 사업장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임금· 단체협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음.
  -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부터 솔선해 상시업무에 대한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동조건 개악시도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우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힘.

### ◈ 통신비정규직, 임금 · 단체협약 마무리

-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협력사협의회는 3월 17일 SK브로드밴드 강동하남센터 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하고, 지난달 표준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과 함께 조합 원 투표에서 가결함.
  - 노사는 단체협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개인사업자나 도급계약직 개통기사를 각 센터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2차 하도급업체에 재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기로 함
  - 또한 개통기사 급여체계를 건당 수수료를 주는 방식에서 고정급에 실적급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노조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 이 면책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단협에 포함됨.
  - 이 밖에 △격주 토요일 휴무 등 휴일·복리후생 확대 △근속·경력포상제도 도입
    △업무용 통신비·유류비 지원 △총 1만 시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제공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함.

-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 지부 조합원은 "교섭 타결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소감을 전하며 "고용도 늘 불안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함.
- 이어 "노조 결성 때부터 우리의 바람은 사측과 상생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 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번에 체결한 임단협을 통해 희망을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달 17일 표준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잠정합의안을 추인함.
  -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개통기사를 센터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각 센터별 재하도급업체를 올해 말까지 없애기로 했으며, 개통기사 임금체계에 고정급을 도입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장근로를 주 6시간으로 명시한다는 데 합의함.
  - 일부 지회가 겪고 있는 조합위 해고·업무배제 문제는 별도로 협의할 계획임.

#### ◈ 현대자동차. '신임금체계안' 제시

- 현대차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5차 본회의에서 제수당 통·폐합과 임금 차등지급을 골자로 한 '신임금체계안'을 지부에 제시함.
  - 현대차는 먼저 1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일반수당과 공통수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직무조사를 벌이고 이를 통해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계획도 밝힘.
  - 현대차는 노동자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 그러나 현대차는 노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인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근 본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회사가 제시한 임금체계안에 대해 지부는 반발하며 투쟁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힘.
  - 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회사 제안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며,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하면 지부는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겠다"고 말함.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에 참여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회사 측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임.

### ◈ 삼성토탈,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구

- 삼성토탈이 노조가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가자 갑자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해 논란이 됨.
  - '필수유지업무'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하는 업무를 말하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삼성토탈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설립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측과 11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어 지난달 7일 충남지방노 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 그러자 사측이 "석유정제사업을 하고 있어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섬.
  - 그러나 삼성토탈은 일반 정유공장과 달리 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액 중석유화학제품·수지부문 비중이 73%인 데 반해 연료 등 에너지부문은 26%에 머물러 있음.
  - 노조의 관계자는 "원유 정제시설도 없는 화학제품 제조공장임에도 사측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함.
  - 상급단체인 화섬연맹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민간사업이자 대체가능성이 있는 석유정제·공급사업을 제외하라고 권고했다"며 "해당 조항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함. 【★■】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